

IV. 인증기관의 재정확보 수단의 기술 및 제품인증 신청자와 인증된 제품의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일반정보

인증기관의 재정확보 수단은 인증업체의 인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별도 사업으로 재정을 확보하여 운영하며, 부과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

1. 수수료

- 수수료는 임검수수료에 따라 산정하며, 임검수수료는 업무 수행시간을 3시간 단계별로 1회 임검으로 산정하며, 1회 임검당 수수료는 206,900 원 이다.
- 수수료의 상한선은 아래와 같다.
 - 형식인증 및 프로젝트 인증: 500 백만원
 - 프로토타입인증 및 부품인증: 200 백만원
 - 기타: 100 백만원
- 상기 수수료는 부가세 제외 금액이며, 상기 수수료 이외에 심사원이 제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(교통비, 출장비 등)는 별도 청구됨.
- 만약 제품인증 신청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수수료를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.
- 수수료는 인증을 신청할 때 75%, 인증서를 교부받을 때 25%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